

11. 環境影響評價法施行規則中改正令

환경부령 제32호 1997. 10. 6

주요 골자

- 가. 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에 공휴일을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견수령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함(제3조제2항).
- 나.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할 사업자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이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 및 그 이행상황과 승계의 일시·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승인기관의 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함(제12조의 2).
- 다. 사업자는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를 조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이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조사기간이 1년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매 연도별 조사결과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별도로 통보하도록 함(제14조제3항).
- 라. 평가대행자와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측정대행자는 수질환경보전법 등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측정대행업자로함(별표 2).

개 정 이 유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1997. 3. 7, 법률 제5302호) 되어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그 통보기한을 정하는 등 모법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종전에는 평가서초안의 공람기간에 실제로 공람을 할 수 없는 공휴일이 산입됨에 따라 실질적인 주민의견수렴기간이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어 앞으로는 공람기간에 공휴일을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그밖에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개발을 통한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평가서초안열람부등의 비치)”를 “(평가서초안의 공람)”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공휴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제1항중 “지방환경청장”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인천지방환경관리청장을 제외하며, 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평가대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평가대행자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평가대행자지정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경우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2. 제1항제4호의 경우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12조 전단중 “승인기관의 장 및 지방환경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승인기관인 장 및 지

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1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2 조의 2(협의내용의 이행의무 승계에
다른 제출서류) 법 제23조제3항의 규
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의무를 승
계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
터 10일 이내에 승인기관의 장 및 지방
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의내용 및 그 이행상황
2. 승계의 일시 및 사유

제13조제1항중 “건설업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를 “건설산업기본법 제
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로 한
다.

제1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3 조의 2(사업착공 등의 통보) 법 제
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착공 등의 통
보를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그 사유
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중 “환경처장관 또는 지방환
경청장”을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
서의 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환경처
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여 동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
환경영향조사결과와 통보는 별지 제10
호서식에 의하여 조사기간이 만료된 날
부터 30일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이 1년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매 연도(사업을 7월 1일 이후에 착공한
경우에는 착공연도를 제외한다)별 조사
결과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별도로 통
보하여야 한다.

제1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4 조의 2(협의기준초과부담금의 납부
통지서 등) ① 영 제14조의 7의 규정
에 의한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이하 “초
과부담금”이라 한다)의 납부통지는 별
지 제11호서식에 의하되, 별지 제12호
서식의 초과부담금 산정명세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② 영 제14조의 8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담금의 재부과 및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③ 영 제14조의 8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담금의 조정신청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다.

제18조중 “지방환경청장”을 “지방환경관
서의 장”으로, “매분기의 교육실적을 당
해 분기종료후 15일 이내에 환경처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매년 1월 15일
까지 전년도의 교육실적을 환경부장관

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항, 제8조, 제9조제2항,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20조중 “지방환경청장”을 각각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3호, 제16조제1항, 제19조, 제21조, 제22조 본문 및 제23조제1항·제2항중 “환경처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의 비고란제1호중 “측정대행자”를 “측정대행자(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소음·진동규제법 제47조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중 “2년간”을 “2년간[제2호(7)의 경우에는 3년간]”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3) 내지 (11)을 (4) 내지 (12)로 하고, 동호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호(7)[중전의 (6)]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제1호(1)의 조사대상사업란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하고, 동호(2)의 조사대상사업란중 “동란의 (4)의 사업과 동란의 (5)”를 “동란의 (5)”로 하며, 동호(3)의 조사대상사업란중 “사업과 동란의 (3)의 사업”을 “사업, 동란의 (3)의 사업과 동란의 (4)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중 (가)·(나) 및 (다)의 단서의 사업”으로 하고, 동호(8)의 조사대상사업란중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법”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8호 서식 내지 별지 제14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최근 1년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3조	지정취소		
(7) 지정받은 후 2년이내에 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이상 환경영향평가대행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13조	경 고	경 고	지정취소